

경기력 향상위원회 규정

제정 2016. 4. 1
경상북도 승인 2016. 4. 27
개정 2018. 5. 18
개정 2019. 2. 18

제 1 장 총 칙

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 본회 규약 제38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, 경기력향상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이라 칭함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규약 제4조에 명시된 사항을 조사, 연구, 심의의결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를 둔다.

제3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종합적인 체육진흥 방안과 경기력향상 기본계획 수립
2. 전국체전 참가 및 선수 강화훈련 계획 수립
3. 선수강화 훈련지도, 감독, 평가에 관한 사항
4. 경기 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
5.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
6. 심상, 심리 스포츠 사업에 관한 사항
7. 스포츠문화진흥에 관한 사항
8. 기타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

제4조(조직)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하고, 부위원장 2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 추천에

의해 회장이 위촉한다.

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회장이 임명한다.

제5조(회의)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④위원장이 유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제6조(위원회 운영) 본 위원회는 제3조에 규정된 기능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(비상설)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사무처리) 본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본회 사무처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.

제8조(시행세칙) 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시행세칙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9조(경비지급) 본 위원회 소집시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5.18)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2.18)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